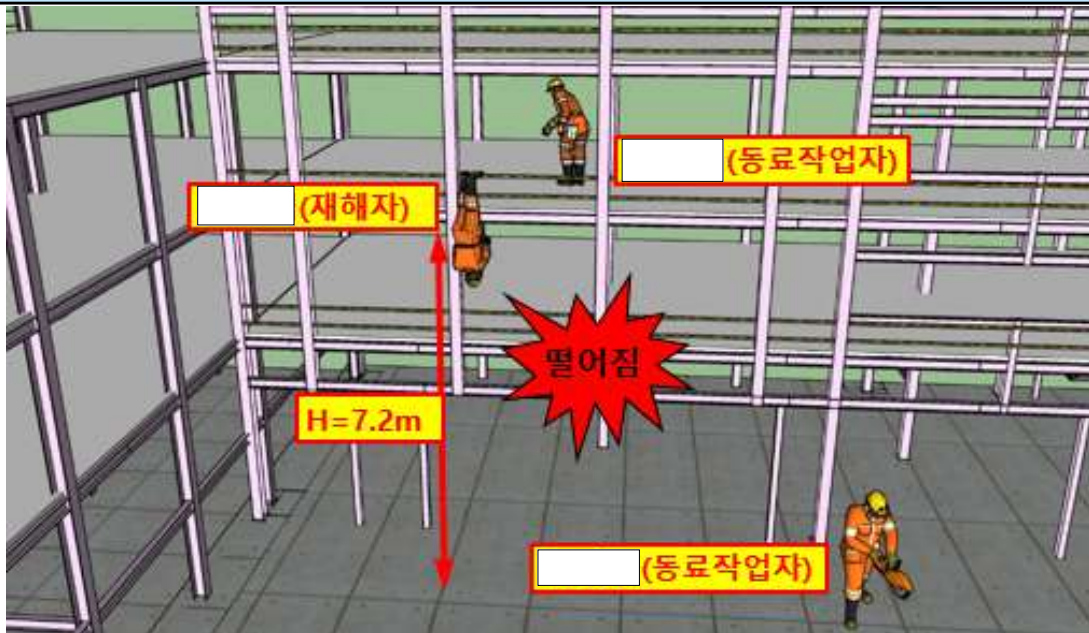


슬래브 철근 상부 이동중 발이 걸려 단부(H=7.2m)로 떨어짐

공 사 명	부산○○ 신축공사	발생일시	2019.8.01.(목)
재해형태	떨어짐	재해정도	사망 1명(철골공)
소 재 지	부산광역시 ○○구 일원	공사규모	지상3층, 건축면적 926.5㎡
재해개요	2019. 08. 01.(목), 11:45경 부산시 ○○구 ○○동 부산○○ 신축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사무동 3층 바닥 슬래브에서 내부칸막이 판넬 지지 철물을 기초립된 슬래브 철근에 용접을 하기 위하여 이동 중 철근에 발이 걸려 몸의 중심을 잃고 3층 슬래브 단부(H=7.2m)로 떨어져 병원 이송 후 치료 중 08.02.(금), 06:00경 사망한 재해임		

재 해 상 황 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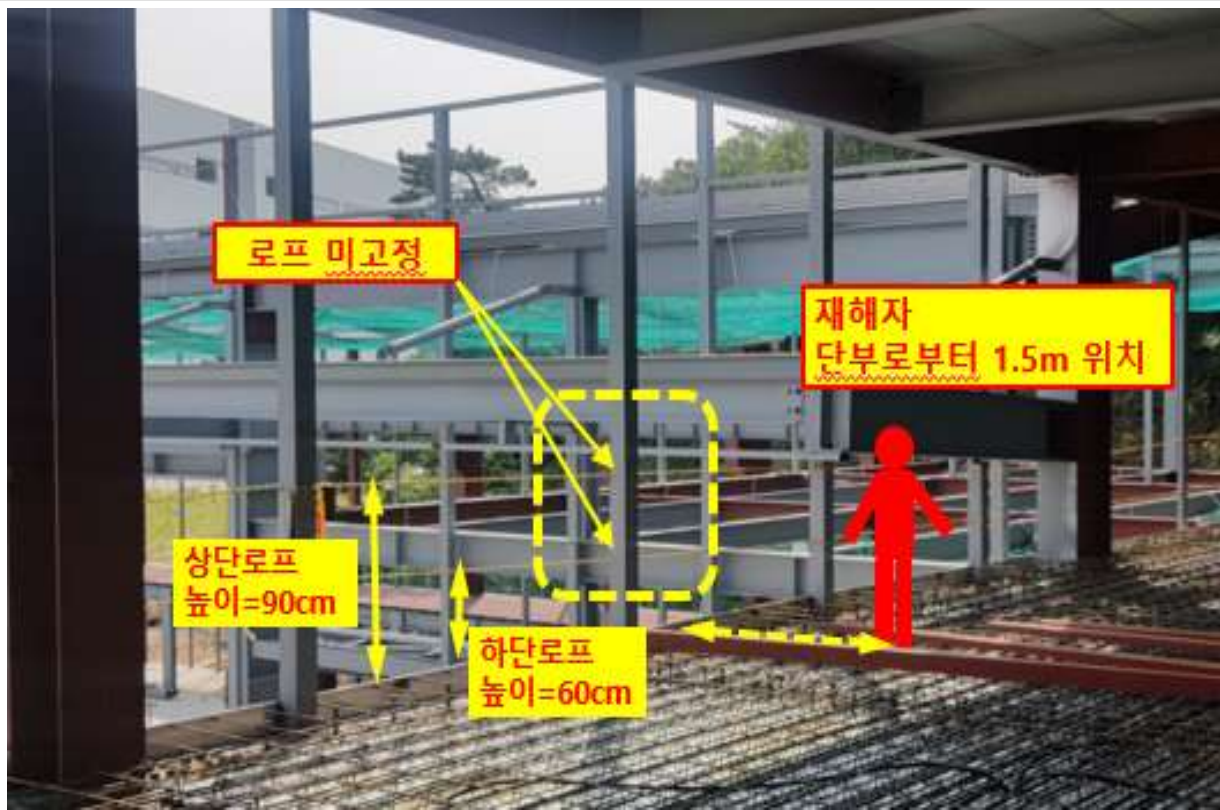
안전대책

○ 작업구간 및 통로 등 근로자 전도방지조치 실시

- 사업주는 철근조립이나 데크플레이크 설치 구간 등 근로자가 작업 중에 발이 빠져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장 바닥을 안전하고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함

○ 슬래브 단부 안전난간 설치 규정 준수

- 안전난간 설치시 지름 2.7센티미터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고,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로 하여야 함



【사진1】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 위치



【사진2】 재해발생 당시 재해자 발빠짐 재현



【사진3】 재해자 작업구간 로프 설치상태



【사진4】 타현장 작업발판 설치 우수사례



【사진5】 타현장 안전난간 설치 우수사례